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 폐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의 재활용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6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: 발광다이오드칩,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
가. 합성수지 재질 및 유가금속 등은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,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
나.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